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3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기준 발동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1006.10.0000	벼	507,279톤	684
1006.20.1000	메 현미		684
1006.20.2000	찰 현미		684
1006.30.1000	멥쌀		684
1006.30.2000	찹쌀		684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684
1102.90.2000	쌀가루		684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684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684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684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684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비고

1.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